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북한이탈주민 명시 (안 제2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7조)

4. 관계법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명시하여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직접 교류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하여, 지역주민 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외부 요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경우도 있음
- 결국,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타 자치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자치구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조성현황	존속기한	2023 기금조성	총 금액 (2023.6.)	연장여부
1	관악구	2019년도	2023.12.31.	-	206,500	하반기 논의예정
2	구로구	2018년도	2023.12.31.	-	307,541	폐지예정
3	금천구	2019년도	2023.12.31.	50,000	204,527	연장예정
4	노원구	2022년도	2025.12.31.	-	76,000	미논의
5	도봉구	2019년도	2023.12.31.	-	173,340	폐지예정
6	동대문구	2019년도	2023.12.31.	-	309,884	연장예정
7	동작구	2019년도	2023.12.31.	-	311,874	연장예정
8	마포구	2014년도	2027.12.31.	50,000	465,316	연장완료
9	성동구	2020년도	2023.12.31.	100,000	478,809	연장예정
10	송파구	2019년도	2023.12.31.	20,000	144,080	폐지예정
11	영등포구	2020년도	2023.12.31.	-	254,355	폐지예정
12	용산구	2021년도	2023.12.31.	-	200,000	폐지예정
13	은평구	2019년도	2023.12.31.	-	424,970	연장예정
14	중랑구	2021년도	2025.12.31.	50,000	151,380	미논의

○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 기금 조성

- 기금 존속기한 연장예정 : 6개 자치구(금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은평)
- 기금 폐지예정 : 5개 자치구(구로, 도봉, 송파, 영등포, 용산)
- 기금 미논의 : 3개 자치구(관악, 노원, 중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1. 10.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